

■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0. 6. 1.>

위험물운송적합증 []발급 신청서 []재발급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(변경)발급: 3일 재발급: 즉시
선박소유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)
신청내용	선박의 종류 및 명칭	선박번호
	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 (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)	
	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 (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)	
	신청사유	

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제24조의3(제24조의4)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(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위험물운송적합증(철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벌칙규정

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의 적재·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.
-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.
-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.
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.
- 「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같습니다.

처리절차

